성주군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군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함.

3. 주요내용

○ 출자·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4조)

○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(안 제6조)

- 출자·출연기관의 장과 군수는 매년 1년 단위 성과 계약서를 체결하고,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 내용 달성 정도를 평가토록 함.

○ 출자·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등 규정(안 제9조)

○ 경영실적 평가 등(안 제10조)

-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계획의 수립시기 및 수립 내용, 경영평가 관련 제출서류 등에 대한 사항과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출자·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,360천원 정도

다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5. 10.22 ~ 11. 11)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 동의

5. 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 시행(2014. 9. 25)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
❍ 주요 내용은

-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- 안 제1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, 출자·출연기관의 정의, 조직·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
-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출자·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임원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을
- 안 제6조에서는 매년 단위성과 계약서 제출 및 성과 계약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
- 안 제7조에서는 출자·출연기관이 사업을 대행할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을
-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도·감독 및 설립허가 취소, 설립 목적 달성 불능 등의 경우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한 해산에 관한 규정을
- 안 제10조에서는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.
- 안 제11조에서는 출자·출연기관의 성과 계약 달성정도, 경영 실적 평가 등의 수행을 위한 경영평가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
-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및 경영 실적 평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❍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,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성주군수
2. 개정이유
 ○ 사회복지분야 등 지방재정의 수요가 증가하여 체납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제한을 명문화하여, 지방세입 증대 및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개정코자 함.
3. 주요내용
 ○ 교부결정(안 제15조제5호)
 - 교부결정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
 ○ 별지서식 신설(제1호~제11호)
 -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 추가
4. 참고사항
 가. 근거법령 : 지방재정법 시행령
 나. 기 타
 1) 예산조치 : 해당없음
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 4)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5. 10. 22 ~ 11. 11)
5. 검토의견
 ❍ 본 조례안은 체납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여, 지방세입 증대 및 자주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서
 ❍ 주요 개정 내용은
 - 안 제15조 제5호에서 “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”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체납유무를 반드시 확인토록 명문화하고,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 총 11종의 별지 서식을 추가로 신설하는 조례로서
 ❍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세수증대 및 자주재원 확보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재정 수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성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「지방재정법」개정(`14. 11. 29 시행)에 따라 성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근거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위원회 설치근거 법령 개정(안 제1조)

-「지방재정법」제33조 제5항 ⇒「지방재정법」제33조 제9항

-「지방재정법」제33조 제6항 ⇒「지방재정법」제33조 제10항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 동의

라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5. 10. 22 ~ 11. 11)

5. 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이 시행(2014. 11.29)됨에 따라 성주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

❍ 주요 개정 내용은

- 안 제1조에서 위원회 설치근거 법령 개정으로「지방재정법」제3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「지방재정법」제33조 제9항 및 제10항 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성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

❍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인「지방재정법」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성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성주군수
2. 개정이유
 ○「지방재정법」개정(`14. 11. 29 시행)에 따라 성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함.
3. 주요내용
 ○ 위원회 설치근거 법령 개정(안 제1조)
 -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0조 ⇒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(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)
 ○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2조)
 -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3을 준용
4. 참고사항
 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
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 다.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 라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5. 10.22 ~ 11. 11)
5. 검토의견
 ❍ 본 조례안은「지방재정법」이 개정(2014. 5. 28) 됨에 따라 성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
 ❍ 주요 개정 내용은
 - 안 제1조에서 “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제70조의 규정에 의한”을“「지방재정법」제60조에 따라”로 위원회 설치근거 법령을 상향 조정하고
 -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「지방재정법」제32조의 3을 준용하고 이 경우 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”는 “지방공시 심의위원회”로 규정하는 사항으로서
 ❍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성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「공직자윤리법」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등 관련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구성대상 확대(안 제2조제1항)

○ 현 조례 :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--위촉

○ 개정(안) :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<u>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</u>--위촉

나. 위원회 기능 확대(안 제5조제2항)

○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
-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하는 것을 제한

○ 퇴직공무원의 업무취급 제한에 대한 승인
- 모든 퇴직공무원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재정보조, 인·허가, 검·감사, 조세부과, 계약 등 업무 취급 제한
-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취급한 재정보조, 인·허가, 검·감사, 조세부과, 계약 등 업무를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퇴직후 2년간 업무취급 제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직자윤리법」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다. 기 타
1) 입법예고 : 2015. 10.8. ~ 10.28(20일간)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3)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「공직자 윤리법」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취업심사 및 재산등록 등 관련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
❍ 주요 개정 내용은
- 안 제1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 구성 대상을 기존의 위촉위원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 신설하였고

-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, 퇴직공무원의 업무취급 제한에 대한 승인 등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한 조례로서

❍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여, 관련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성주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이 개정(2014.8.7 시행)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조례의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대체하여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, 각 조례의 개정취지가 동일하므로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「성주군 주민투표 조례」등 15개 조례, 35개 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개정

연번	소관부서	자치법규명	서식 명칭	비고
1	총무과	성주군주민투표조례	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서	
2	〃	〃	청구인대표자증명서	
3	〃	〃	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	
4	〃	〃	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	
5	〃	〃	청구인서명부	
6	〃	〃	주민투표청구서	
7	〃	〃	이의신청서	
8	〃	성주군 포상조례	공적조서	
9	재무과	성주군 수입증지 조례	수입증지판매인지정신청서	
10	주민복지과	성주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	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	
11	〃	〃	화장장려금 지급대장	
12	〃	성주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	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급신청서	
13	〃	〃	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	
14	농정과	성주군참외산업발전에관한조례	참외유통지도원증	
15	〃	성주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	성주군농산물산지(유통센터·공판장·판매장) 사용허가서	
16	새마을체육과	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	새마을소득사업자금대부신청서	
17	산림과	성주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	가로수 사업승인신고서	
18	안전건설과	성주군 농업기반공사 구역 외 농업생산기반 시설 관리 조례	수리계 등록 신청서	
19	〃	〃	수리계등록증	
20	〃	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	성주군자율방재단가입신청서	
21	〃	〃	가입희망회원명부	
22	〃	〃	성주군자율방재단원증	
23	보건소	성주군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	첫임신축하금신청서	
24	〃	〃	출산축하금신청서	
25	〃	〃	영아양육지원금신청서	
26	〃	〃	첫돌맞이축하금신청서	
27	〃	〃	첫임신 축하금지원대장	
28	〃	〃	첫돌맞이 축하금 지원대장	
29	〃	〃	출산 축하금 지원대장	
30	〃	〃	영아 양육지원금지원대장	
31	〃	〃	성주아기보험 관리대장	
32	농업기술센터	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운영 조례	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	
33	의회사무과	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	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	
34	〃	〃	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심의결과	
35	〃	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	증인선서(일반인)	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협 의 : 소관부서 협의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의견없음.(2015. 10.8. ~ 10.28)
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
3)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의 개정 (2014. 8. 7)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조례의 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 를 “생년월일”로 대체하여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
❍ 주요 개정 내용은

-「성주군 주민투표 조례」「성주군 포상조례」등 총무과를 비롯한 10개부서의 15개 조례, 35개 서식에 있는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

- 각 조례의 개정 취지가 동일함으로 개별 개정안을 하나의 법령안에 모아서 개정하는 일괄 개정 방식을 통하여 조례 개정의 효율성을 높인 것입니다.

❍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